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

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
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생활방역	지역 유행 단계		전국 유행 단계	
생활 속 거리두기	지역적 유행 개시	지역 유행 급속 전파, 전국적 확산 개시	전국적 유행 본격화	전국적 대유행

2 다중이용시설 분류 체계

<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>

구분	대상 시설
중점관리시설 (9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유흥시설 5종 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 ▲ 노래연습장 ▲ 실내 스탠딩공연장 ▲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▲ 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)
일반관리시설 (14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PC방 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 ▲ 학원(교습소 포함) ▲ 직업훈련기관 ▲ 목욕장업 ▲ 공연장 ▲ 영화관 ▲ 놀이공원·워터파크 ▲ 오락실·멀티방 등 ▲ 실내체육시설 ▲ 이·미용업 ▲ 상점·마트·백화점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
기타시설	▲ 중점·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

3

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(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)

구분	2단계 / 지역 유행 단계
유흥시설 5종 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	▲ 집합 금지
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	▲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▲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▲ 노래·음식 제공 금지
노래연습장	▲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▲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▲ 음식 섭취 금지 ▲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
실내 스탠딩 공연장	▲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▲ 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1m 거리두기
식당 · 카페 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과점영업)	▲ 카페는 포장·배달만 허용 ▲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·배달만 허용 ▲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㎡ 이상)
	(뷔페의 경우) ▲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▲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
※ 공통적으로 ① 마스크 착용, ② 출입자 명단 관리, ③ 환기·소독 등 수칙 의무화, 음식 섭취 금지 하는 경우에도 물·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

4

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(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)

구분	2단계 / 지역 유행 단계
결혼식장	▲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장례식장	▲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목욕장업	▲ 음식 섭취 금지 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영화관	▲ 음식 섭취 금지 ▲ 좌석 한 칸 띄우기
공연장	▲ 음식 섭취 금지 ▲ 좌석 한 칸 띄우기

구분	2단계 / 지역 유행 단계
PC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 ▲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오락실 · 멀티방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음식 섭취 금지 ▲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실내체육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21시 이후 운영 중단 ▲음식 섭취 금지 ▲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직업훈련기관, 학원 (교습소 포함, 독서실 제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음식 섭취 금지 ▲①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, 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* ①,안, ②안 중 선택
독서실, 스터디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음식 섭취 금지 ▲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▲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, 21시 이후 운영 중단
놀이공원 · 워터파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
이 · 미용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
상점 · 마트 · 백화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 의무화 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

※ 기타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, 2.5단계에서 시설 면적 4㎡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,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를 실시한다.

5 단계 격상에 따른 활동별 방역 강화 (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)

구분	2단계 / 지역 유행 단계
마스크 착용 의무화 (위반 시 과태료 부과)	▲실내 전체 + 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
모임·행사	▲100인 이상 금지
스포츠 관람	▲관중 10% 입장
직장 근무	▲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
교통시설 이용	▲마스크 착용 의무화, 음식 섭취 금지 추가
등교	▲밀집도 1/3 원칙, 조정 가능
종교활동	▲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%로 인원 제한, 모임·식사 금지

※ 마스크 착용은 1단계에서도 실내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, 사회적 수용성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의무화(과태료 부과) 범위는 차등적으로 확대

6

단계 격상에 따른 국공립시설 등 운영 방안 (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)

- (국공립시설) 경륜·경마 등, 체육시설, 기타 문화·여가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운영 중단·제한

구분	2단계 / 지역 유행 단계
운영 중단 시설	▲경륜·경마 등

- (사회복지이용시설) 돌봄공백 최소화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, 2.5 단계까지 지속 운영, 3단계에 휴관하되 긴급돌봄은 제공